

●산림청고시 제2022-78호

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

「산지관리법」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.

2022년 07월 22일

산림청장

보전산지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

1. 관계도면 : 생략 (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,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같음)

가. 보전산지 지정해제

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		도면의 명칭	도엽의 번호	구역의 표시
경기도	용인시처인구	안성022	NJ52-9-27-022	준보전산지
경기도	용인시처인구	안성022	NJ52-9-27-022	준보전산지
경기도	가평군	일동076	NJ52-9-6-076	준보전산지
충청북도	청주시서원구	대전007	NJ52-13-20-007	준보전산지
충청북도	청주시서원구	청주097	NJ52-13-13-097	준보전산지
전라남도	여수시	여수016	NI52-6-10-016	준보전산지
전라남도	여수시	여수025	NI52-6-10-025	준보전산지
전라남도	여수시	여수034	NI52-6-10-034	준보전산지
전라남도	여수시	여수035	NI52-6-10-035	준보전산지
전라남도	여수시	여수044	NI52-6-10-044	준보전산지
전라남도	여수시	여수045	NI52-6-10-045	준보전산지
전라남도	완도군	거금061	NI52-6-15-061	준보전산지

※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「산지관리법」 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(<http://www.forestland.go.kr>) 및 토지이음 (<http://www.eum.go.kr>)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.

2. 열람장소

보전산지 지정해제 관계 도·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.

부 칙

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② 보전산지 지정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.